

2022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4차 사업 공모 국제예술교류

주제특화 예술지원

민간 예술단체의 국제예술교류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예술인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 및 창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4차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2. 5.

공모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12.
- 사업내용 : [주제특화예술지원] 지원영역 중 '국제예술교류' 지원

구분		지원분야	사업예산	비고	
지원영역					
부산문화예술 지원사업	창작 활동지원	기초예술 창작활동 및 발표지원	창작역량강화	5천만원	공모완료(3차)
			우수예술지원 (문학/시각예술/ 공연예술/예술비평)	33억원	공모완료(1차)
	예술가치 확산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확산, 다양성 확대	다원예술	1억 8천만원	공모완료(2차)
			공공예술	2억원	
	주제특화 예술지원	예술기반 지역특성 및 시민향유 등의 공공성 심화	재지원사업 (레퍼토리지원)	2억원	
			국제예술교류	1억 5천만원	4차 공모
유통· 홍보지원	예술작품의 유통 및 판로 확장	창작활동 영상제작지원	5천만원	공모완료(3차)	

2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2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4차 공모

○ 공고 및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2. 5. 3.(화) ~ 5. 31.(화) [29일 간]
- 신청기간: 2022. 5. 20.(금) ~ 5. 31.(화) 17:59 까지 [12일 간]

○ 신청방법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af.or.kr)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0 부터는 신청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마감일 17:59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작성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후에는 반드시 다시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접수완료> 안내는 시스템 상 지원접수가 제출 되었다는 의미이며, 서류의 내용이나 파일이 검증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전, 첨부파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및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첨부파일 등록 시 파일이름은 '[단체명]제출자료명'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용량이 100MB를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ID, 비밀번호 분실, 시스템 오류 등 문제발생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577-8751

기본사항

1 지원기준

- 사업수행 시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지원이 원칙임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의 기본 공통사항 「신청제한」 및 「심의배제」 등에 따르며, 그 외 지원제외사업(지원방침)은 '국제예술교류' 상세 안내 참고

2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도입에 따라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주요경력, 활동실적 등)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서식 참고
- '사업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 기준'에 의거 사업선정 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현저히 축소·변경될 경우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 표1 참고

3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제한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지원신청자격 미달, '신청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소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등이 있는 단체
- ※ 휴·폐업 상태인 예술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2020~2022년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함(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 발급일과 무관함)
- 최근 5년간(2017~2021년) 2회 이상 국제예술교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신청제한사항

지원신청 부적격자

- 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단체
- ②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③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출자·출연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 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 ④ 언론사·학교·학원·종교·친교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
- ⑤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관련(연루)되거나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단체 및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단체
<불공정 행위>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 및 제6조의3(재정지원의중단)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경우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확정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⑥ 보조금(지원금) 위반행위 단체 및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⑦ 성희롱, 성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혹은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⑧ 성희롱, 성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 성폭력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은 부산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및 재단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⑨ 정년이 보장된 현직대학 전임교수 이상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

(단, 대표자가 일정기간 후 교체되는 임기제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하며 선정 후 정관 또는 회의록 등 관련 서류 필수제출)

- ⑩ 부산문화재단 내 해당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불이익 적용을 받았을 경우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 기한을 초과 하였거나 완료되지 않은 단체(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 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수행한 단체
- ⑪ 2022년도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단체
- ⑫ <국제예술교류> 사업공고 내 지원신청 및 선정제한을 둔 단체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① 당해연도에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단, 타기관의 중복수혜 가능사업에 대하여 부산문화재단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② 현직 교사·교수의 학술지 발표, 연구활동 등으로 이중 지원 받는 사업
- ③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④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⑤ 지원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 ⑥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⑦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 ⑧ 타기관·조직의 주최(기획)사업, 참여(부분 출연 등) 사업
- ⑨ 초·중·고, 예비예술인(대학생)이 50% 이상 사업 수행자로 참여하는 사업
- ⑩ 학위청구 등 기관(조직) 내 연구활동 실적 제출을 위한 사업
- ⑪ 2022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 ⑫ <국제예술교류> 사업공고 내 지원신청 및 선정제한을 둔 사업

※ 심의배제사항에 해당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심의 관련

○ 심의배제사항

- 지원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
- 2022년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사업으로 신청했을 경우

○ 심의방법 및 절차

① 행정검토

- 제출서류 사전 검토 후 적격여부 확인, 심의 배제 적용



② (서류·PT)종합심의

- 제출서류 검토 및 PT발표 및 심의위원 심층 질의응답, 심의위원 개별 채점 진행
- 지원 대상사업 및 금액 최종 결정

- 심의결과발표 : 2022년 6월 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예정)

5 문의처

- 예술진흥본부 예술지원팀 051-745-7237

국제예술교류 상세안내

지원목적	민간 예술단체의 국제예술교류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 및 창작역량 강화 등 국제화 도모				
지원분야	문화예술 전 분야				
사업기간	2022년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소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소재지가 부산이며, 2020~2022년도 설립 단체 지원신청 불가함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최근 5년 간(2017~2021년) 2회 이상 국제예술교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내용	국제예술교류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참고)				
지원규모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 성격에 따라 최대 1 ~ 3천만원 이내 지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또는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예술가(단체)·기관 등과 공동(협업) 제작 및 창작 발표하는 사업 - 부산·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 또는 참가하는 사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국내</td> <td>문화예술 상호교류활동 ※ 해외예술가(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국내거주 해외 국적자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외</td> <td>해외 예술가(단체)·기관 등과 공동 협업 및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받아 진출, 참가</td> </tr> </table> <p>※ 공식초청 문서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등 번역문과 함께 제출 - 해외 파트너의 초청조건, 초청기관 및 행사장소 소개 <p>※ 당해 연도 사업수행 및 종료가 원칙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p>	국내	문화예술 상호교류활동 ※ 해외예술가(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국내거주 해외 국적자 제외)	국외	해외 예술가(단체)·기관 등과 공동 협업 및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받아 진출, 참가
국내	문화예술 상호교류활동 ※ 해외예술가(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국내거주 해외 국적자 제외)				
국외	해외 예술가(단체)·기관 등과 공동 협업 및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받아 진출, 참가				
지원제외사업 (지원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공통사항 「신청제한」 및 「심의배제」 등 참조 ■ 그 외 지원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목 성격의 단순방문 및 초청행사 지원 불가 -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 아마추어 단체 및 동호회 사업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레지던시활성화'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교류 기관 변경 시 지원금 취소(확정된 기관과 사업신청) ※ 해외체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신청 불가 및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또는 해당지역 주재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바람

지원심의

- 심의방법: 서류 및 PT·인터뷰심의
- 심의추진 절차

공모 및 접수	'22. 5. 3. ~ '22. 5. 30.
지원심의	'22. 6월 초
최종확정 및 결과 발표	'22. 6월 중순(예정)

- 심의기준

구분	세부평가내용
신청 주체의 전문성 및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예술단체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인가? • 신청 단체가 전문적인 예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파트너는 해당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직질 수준이 뛰어난가? • 국제예술교류 사업으로서 차별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대안방안을 제시 하였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예산계획은 사업의 규모 대비 타당하고 적절한가? • 국제예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가? •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비, 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 교부 이전에 집행한 자체자금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

보조금(지원금) 용도 및 집행방법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일반수용비	사례비	프로그램 참여자(스텝, 출연진) 사례비 ※ 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서면작성 및 국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법률 및 조세조약에 의거한 세액 납부 필수
	홍보비	프로젝트 수행 관련 홍보물 제작비
	참가비	컨퍼런스, 국제총회 등 참가비용 ※ 국제아트페어 등 상업적 교류행사 지양
	통·번역비	해외초청예술가 통역비용 등 ※ 통·번역단가는 한국외대통번역센터 누리집 참고
	회계검사 수수료	회계검사수수료
	제작비	결과물 제작비(영상 및 촬영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	공연, 전시 등 시설 대관료
	장비 임차료	장비, 악기 임차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세액 및 수수료	고용보험료, 비자 발급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등
여비	항공료	한국-사업 파트너 국가(도시) 간 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숙박비

■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 기준)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제출자료

※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필수 제출자료

서류안내 및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활동실적자료 (행사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신청 단체명, 활동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영상자료 등) • 재단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② 사업기획안 (프레젠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필수기재사항/자유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사업내용, 장소(주소, 규모 등 기재) 등 - 해외 파트너의 초청 조건, 초청기관 소개, 사업장소 소개(현장사진 포함), 영상자료 등
③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대관계약서 등 공식문서) ※ 해외문서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과 함께 제출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
 -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 제출자료(필수)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 내 첨부하여 제출
 -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까지 첨부 가능하며, 제출 시 파일오류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바람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 만 지원신청 가능
 -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 접수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발송되는 '접수완료' 안내는 시스템 상 지원접수가 제출되었다는 의미이며, 제출된 서류내용 검토 및 파일이 검증된 것은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표1] 사업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 기준표

변경사항		변경규모	조치사항	해당분야
사업주최	사업주최자	사업주최자 변경	지원금 취소	전 분야
사업규모	공연·행사횟수 전시일수 참여자수	50% 이상 축소	지원금 삭감	전 분야
	사업장소	규모(객석수·전시장소) 50% 이상 축소	지원금 삭감	전 분야
사업내용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지휘자, 협연자 변경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공연예술 분야
		연출가, 극작가 변경		
		안무가 변경		
	작품내용	작품 변경	지원금 취소	전 분야
		공연·전시 프로그램 발간물 목차 등 내용 50% 이상 변경	지원금 삭감	
		창작초연이 재연작품으로 변경	지원금 삭감	공연예술 분야
사업예산	예산집행항목 50% 이상 변경	지원금 삭감	전 분야	

- ▶ 사업시작일 이후 교부신청 시 사업 변경사항 확인 불가에 따라 지원금은 취소 및 삭감되며, 해당 결과는 지원사업자의 추후 공모신청사업 평가에 반영됨
- ▶ 교부 후, 재단과 사전에 협의없이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 세부결정사항은 분야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표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첨부파일 등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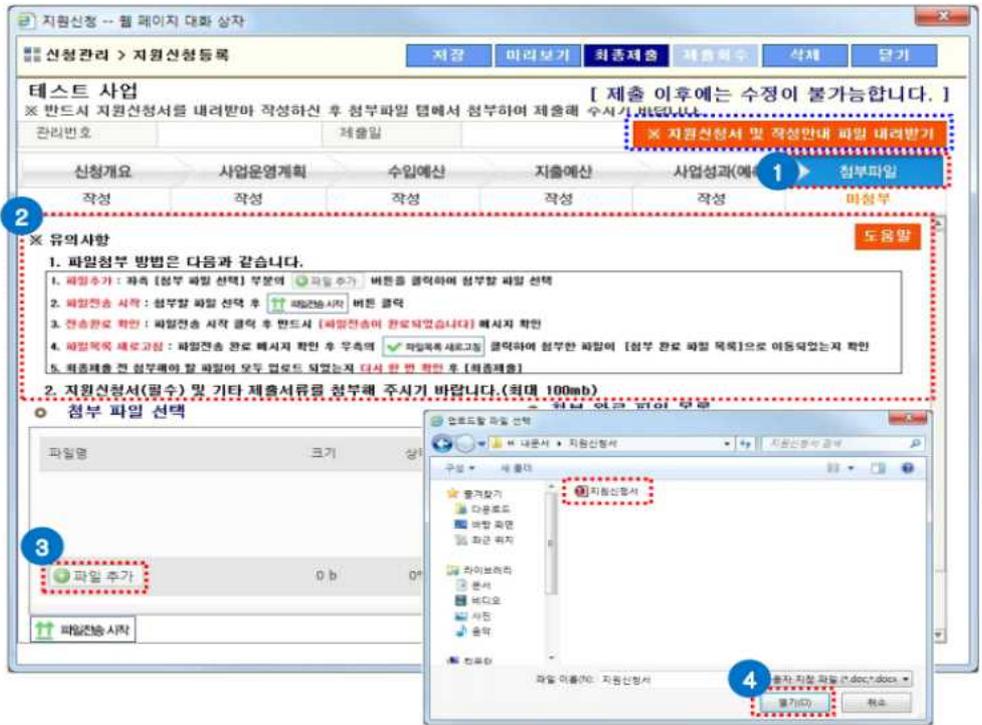
1 [첨부파일] 클릭

2 유의사항 확인

- 파일첨부 및 제출 요령 확인
 - 지원신청서 및 기타제출 서류 확인
- 지원신청서는 주관기관에서 양식을 게시한 경우, 상단의 [지원신청서 및 작성안내 파일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파일 작성 후 작성한 파일을 첨부

3 [파일추가] 버튼 클릭

4 열린 창에서 첨부할 파일 선택 후 [열기]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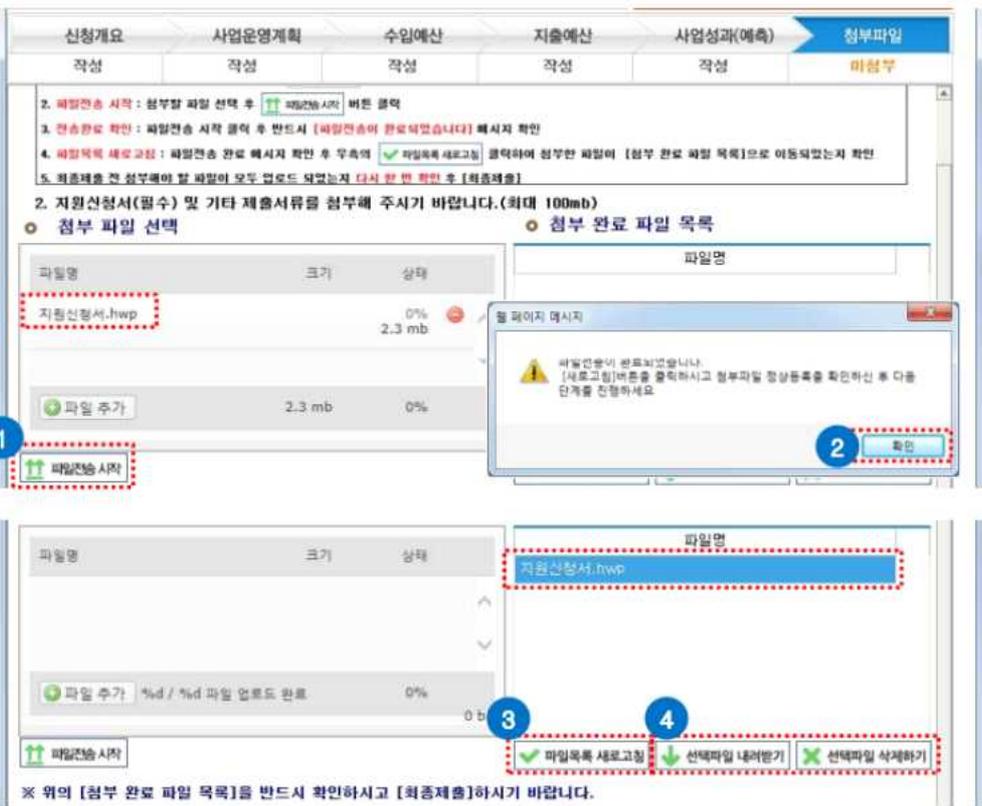
1 첨부할 파일 확인 후 [파일전송 시작] 클릭

2 파일전송 완료 메시지 확인

3 [파일목록 새로고침] 클릭하여 파일이 정상 등록 되었는지 확인

4 파일 내려받기

파일 삭제
전송 완료 한 파일을 확인 후 삭제하고자 할 경우 파일을 선택 후 [선택파일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



※ 위의 [첨부 완료 파일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